

제2507호
2017. 3. 22.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류 용 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7-17호 : 지적측량기준점 성과고시 2
- 공 고
 제2017-218호 : 세운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5
 제2017-225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17호

지적측량기준점성과고시

지적측량기준점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기 고시합니다.

2017년 03월 15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인

측량기준점 명 칭	번 호	평면직각총횡선수치		소 재 지	설치일자	표지의 재질
		X(m)	Y(m)			
지적도근점	30	451538.910	198208.610	을지로1가 63	1902.11.30	철재식
지적도근점	903	451433.510	201312.850	무학동 75	2006.12.15	철재식
지적도근점	922	450216.310	196900.120	만리동2가 33-1	2004.03.30.	철재식
지적도근점	928	450467.950	197142.480	만리동1가 1	2004.03.30.	철재식
지적도근점	929	450536.070	197149.110	만리동1가 1	2004.03.30.	철재식
지적도근점	933	450787.030	197230.090	중림동 44-1	2004.03.30.	철재식
지적도근점	936	450779.560	197423.510	순화동 208-7	2004.03.30.	철재식
지적도근점	950	451486.270	201528.290	황학동 757	2004.03.30.	철재식
지적도근점	951	451477.010	201465.410	흥인동 162-1	2004.03.30.	철재식
지적도근점	961	451244.550	201261.070	무학동 77	2004.03.30.	철재식
지적도근점	967	451374.170	200886.000	신당동 226-4	2004.03.30.	철재식
지적도근점	976	451498.310	197515.180	정동 6-1	2005.08.19.	철재식
지적도근점	1108	451513.970	198217.940	을지로1가 180-2	2008.07.11.	철재식
지적도근점	1148	451879.300	197700.060	정동 1-60	2008.07.11.	철재식
지적도근점	7117	451020.430	200547.780	장충동1가 48-22	2002.04.24.	철재식
지적도근점	7122	450978.850	200737.590	장충동1가 44-21	2002.04.24.	철재식
지적도근점	7264	450491.970	199388.970	필동2가 84-34앞	2002.11.11.	철재식
지적도근점	7317	451350.810	199348.880	인현동1가 101-1앞	2002.11.15.	철재식
지적도근점	7524	450667.730	197740.180	남대문로5가18-5번지 앞	2003.11.03.	철재식
지적도근점	7699	451121.210	201899.580	신당동 80-147	2005.03.02.	철재식

측량기준점 명칭	번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		소재지	설치일자	표지의 재질
		X(m)	Y(m)			
지적도근점	7762	451220.470	202163.000	신당동 85-62번지일대	2005.04.25.	철재식
지적도근점	7764	451241.420	202148.320	신당동 85-62번지일대	2005.04.25.	철재식
지적도근점	7766	451245.190	202117.180	신당동 85-62번지일대	2005.04.25.	철재식
지적도근점	7835	451373.670	198865.930	저동1가 1-13	2005.09.06.	철재식
지적도근점	7964	451562.730	200117.250	을지로5가 273-4	2006.05.10.	철재식
지적도근점	8031	450409.680	199323.490	중구 예장동 1-54	2006.10.17.	철재식
지적도근점	8032	450438.880	199303.860	중구 예장동 1-53	2006.10.17.	철재식
지적도근점	8126	451492.420	200674.880	을지로7가 112-1	2006.12.07.	철재식
지적도근점	8127	451480.510	200704.160	을지로7가 108	2006.12.07.	철재식
지적도근점	8206	451338.930	201156.900	신당동 239-6	2007.01.02.	철재식
지적도근점	8235	451590.570	199520.830	을지로4가 14	2007.02.12.	철재식
지적도근점	8307	451602.860	198907.440	을지로2가 108-28	2007.10.22.	철재식
지적도근점	8318	451669.060	201946.650	황학동976	2007.10.22.	철재식
지적도근점	8445	449944.070	196624.200	만리동2가 231-43	2008.04.03.	철재식
지적도근점	8466	450228.590	196889.010	만리동2가 23-1	2008.04.03.	철재식
지적도근점	8528	450888.990	199661.410	필동3가 1-8	2008.10.10.	철재식
지적도근점	8566	451300.490	198471.970	명동1가 59-19	2008.10.15.	철재식
지적도근점	8599	450475.470	198595.730	예장동 8-180	2008.10.29.	철재식
지적도근점	8603	450529.520	198519.300	회현동2가 48-7	2008.10.29.	철재식
지적도근점	8649	451109.570	201201.870	신당동 304-684	2008.11.04.	철재식
지적도근점	8689	451566.520	199486.900	을지로4가 313-12	2008.11.21.	철재식
지적도근점	8690	451569.510	199514.820	을지로4가 311-7	2008.11.21.	철재식
지적도근점	8699	451206.080	199541.200	인현동2가 182-2	2008.11.21.	철재식
지적도근점	8750	450928.780	199625.280	필동2가 72-16	2009.01.14.	철재식
지적도근점	8752	450978.850	199629.160	필동2가 72-16	2009.01.14.	철재식
지적도근점	8753	450996.940	199637.800	필동2가 72-14	2009.01.14.	철재식
지적도근점	8935	451286.660	200358.930	쌍림동 22-1	2010.09.20.	철재식
지적도근점	8952	451648.160	198849.790	장교동 23-1	2011.05.26.	철재식
지적도근점	9003	451451.550	198857.210	을지로2가148-111	2011.10.07.	철재식
지적도근점	9082	450467.590	197111.440	만리동1가 35-1	2011.12.19.	철재식
지적도근점	9107	450511.670	198283.620	회현동1가 110-1	2013.02.27.	철재식

측량기준점 명칭	번호	평면직각중형선수치		소재지	설치일자	표지의 재질
		X(m)	Y(m)			
지적도근점	9108	450476.700	198268.190	회현동1가 100-16	2013.02.27.	철재식
지적도근점	9109	450425.670	198255.870	회현동1가 110-1	2013.02.27.	철재식
지적도근점	9110	450421.730	198202.940	회현동1가 100-105	2013.02.27.	철재식
지적도근점	9123	450694.430	198515.370	남산동1가 15-2	2013.02.27.	철재식
지적도근점	9157	450824.880	197393.590	순화동 199-3	2013.05.08.	철재식
지적도근점	9200	451454.640	200777.480	을지로7가 14-4	2014.04.01.	철재식
지적도근점	9259	451290.600	197870.020	태평로2가 113-1	2014.10.22.	철재식
지적도근점	9262	451077.440	197547.470	서소문동 72-4	2014.10.22.	철재식
지적도근점	9270	451165.520	197571.820	서소문동 72-2	2014.10.22.	철재식
지적도근점	9285	450700.020	197643.110	남대문로5가 84-15	2014.11.14.	철재식
지적도근점	9291	451772.910	198222.170	다동 33-3	2015.01.08.	철재식
지적도근점	9336	451601.910	198842.810	을지로2가 108-1	2015.11.09.	철재식
기준원점명			중부원점			
측량성과보관장소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폐기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7 - 218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119 (2014.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7년 03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

세운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안)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사업의 명칭 : 세운 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공람 · 공고 내용

- 가. 사업명칭 : 세운6-4-2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나. 위 치 : 서울시 중구 충무로4가 55 일대
- 다. 시행면적 : 2,128.9㎡
- 라. 건축계획 : 지하4층/지상15층, 연면적 15,686.36㎡, 업무시설(오피스텔)
- 마. 정비기반시설 : 도로 1,353㎡

3. 공람기간 : 2017.03.22 ~ 2016.04.05.(14일간)

4. 시 행 자

-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당재봉로 59-47 (☎) 02-2285-1566
- 성 명 : (주)충무로개발 대표 박경남

5. 사업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8개월

6. 공람장소 : 중구청 도심재생과(☎) 3396-5754

7. 관계도서 : 세운 6-4-21구역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 중구청 도심 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225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03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반영 (안 제6조)
- 나. 과오납 이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를 따르도록 하던 것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도록 함 (안 제9조)
- 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 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에 해당하는 요율을 일반적 요율(0.05)로 적용할 경우 실효성측면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에 주민참여 저조 또는 사업 유명무실화가 우려되어 노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점용요율을 **0.02로 신설함**(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 라. 전통시장 상인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여 전통시장내에 실명제를 정착시키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자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요율을 0.01로 하향 조정함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가로환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예관동), 문의전화:3396-6005, FAX:3396-8828, 메일:wonseok22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3 제7호 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1 를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 호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 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토지가격에 0.02을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8.)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용료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p>	<p>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 제3조----- -----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②(생 략)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p>	<p>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②(현행과 같음) ③-----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p>

신·구 별표1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영 별 표3 제7 호에서 정 한 점용 물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점용면 적 1㎡	1년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 포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 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 열대			토지가격에 0.03 를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 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 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3. 영 별 표3 제11 호에서 정 한 점용 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 탁판매	점용면 적 1㎡	1년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 탁판매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 (서울특별시 에너 지조례에 따라 설 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신 설>			<신 설>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8.)				※비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8.)			